

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

해당 건축물은 『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**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(임시)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,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명소방서로 신고**해야 합니다.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**선임하지 않을 경우**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**관계인(관리자·소유자·점유자)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되며, **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**기간 내에 선임 및 신고**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교육이 있지 아니하여 **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**해야함

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(대행업체를 통한 소방안전관리자 제외, 이하 같음)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4)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
②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안내 : 한국소방안전원

- 접수방법 : 인터넷(<http://www.kfsa.or.kr>) 또는 방문접수 / 대표번호 1899-4819

지 부 명	소 재 지	전 화 번 호
서울지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170, 2층(영등포동8가)	02-2671-8688
경기지부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(화서동)	031-257-0131~3
인천지부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(공촌동)	032-569-1971~2

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

해당 건축물은 『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**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(임시)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,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명소방서로 신고**해야 합니다.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**선임하지 않을 경우**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**관계인(관리자·소유자·점유자)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되며, **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**기간 내에 선임 및 신고**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교육이 있지 아니하여 **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**해야함

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(대행업체를 통한 소방안전관리자 제외, 이하 같음)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4)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
②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안내 : 한국소방안전원

- 접수방법 : 인터넷(<http://www.kfsa.or.kr>) 또는 방문접수 / 대표번호 1899-4819

지 부 명	소 재 지	전 화 번 호
서울지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, 2층(영등포동8가)	02-2671-8688
경기지부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(화서동)	031-257-0131~3
인천지부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(공촌동)	032-569-1971~2

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

해당 건축물은 『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**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(임시)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,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명소방서로 신고**해야 합니다.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**선임하지 않을 경우**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**관계인(관리자·소유자·점유자)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되며, **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**기간 내에 선임 및 신고**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**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교육이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해야함**

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(대행업체를 통한 소방안전관리자 제외, 이하 같음)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4)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
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위험물기능장·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- 4)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,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(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)

②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안내 : 한국소방안전원

- 접수방법 : 인터넷(<http://www.kfsa.or.kr>) 또는 방문접수 / 대표번호 1899-4819

지 부 명	소 재 지	전 화 번 호
서울지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, 2층(영등포동8가)	02-2671-8688
경기지부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(화서동)	031-257-0131~3
인천지부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(공촌동)	032-569-1971~2

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

해당 건축물은 『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**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(임시)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,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명소방서로 신고**해야 합니다.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**선임하지 않을 경우**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**관계인(관리자·소유자·점유자)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되며, **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**기간 내에 선임 및 신고**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**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교육이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해야함**

①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(대행업체를 통한 소방안전관리자 제외, 이하 같음)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4)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
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위험물기능장·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- 4)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,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(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)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1)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2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- 3)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,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(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)

②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안내 : 한국소방안전원

- 접수방법 : 인터넷(<http://www.kfsa.or.kr>) 또는 방문접수 / 대표번호 1899-4819

지 부 명	소 재 지	전 화 번 호
서울지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, 2층(영등포동8가)	02-2671-8688
경기지부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(화서동)	031-257-0131~3
인천지부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(공촌동)	032-569-1971~2

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

해당 건축물은 『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**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건축물 (임시)사용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,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명소방서로 신고**해야 합니다.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**선임하지 않을 경우**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**관계인(관리자·소유자·점유자)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되며, **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**기간 내에 선임 및 신고** 하시기를 바랍니다.

※ **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교육이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해야함**

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**300세대 이상인 아파트**
- 나. **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**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)
- 다.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
 - **공동주택 중 기숙사, 의료시설, 노유자 시설, 수련시설, 숙박시설**(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)

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

-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 - 1)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2)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(대행업체를 통한 소방안전관리자 제외, 이하 같음)이 있는 사람
 - 3)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4)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5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 - 1)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2)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
- 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- 1) 위험물기능장·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
 - 2)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 - 4)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,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(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)
- 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- 1)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 - 3)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,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(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)
- 마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, 기계제작, 기계장비설비·설치, 화공, 위험물, 전기,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
- 바.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
- 사. 특급·1급·2급·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
- 아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인원

- 가. 아파트 : 1명. 다만,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
- 나. 1만5천제곱미터 이상 : 1명. 다만,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(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, 소방물탱크차,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)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
- 다. 공동주택 중 기숙사, 의료시설, 노유자 시설, 수련시설, 숙박시설 : 1명. 다만,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

④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안내 : 한국소방안전원

- 접수방법 : 인터넷(<http://www.kfsa.or.kr>) 또는 방문접수 / 대표번호 1899-4819

지 부 명	소 재 지	전 화 번 호
서울지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, 2층(영등포동8가)	02-2671-8688
경기지부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(화서동)	031-257-0131~3
인천지부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(공촌동)	032-569-1971~2